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(위·수탁거래)



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자 간에 공정한계약조건에 따라 상품의 납품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.

이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.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거래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맞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.

주식회사 _____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_____회사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다음 과 같이 온라인쇼핑 표준거래계약(이하 "이 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 [목적]

이 계약서의 목적은 "갑"과 "을" 간 상품의 위·수탁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 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.

제2조 [기본원칙]

- ① "갑"과 "을"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.
- ② "갑"과 "을"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.

제3조 [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]

"갑"과 "을"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.

- 1. 상대방에게 금품, 향응,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,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- 2.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 다.
- 3. "갑"은 납품업체 사이에 합리적 이유없이 대우의 차별을 두지 않고, 수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등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.

제4조 [계약기간]

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단, 본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,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- ② "갑"은 "을"과 "을"의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"을"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.
- ③ "갑"은 위 ③항을 포함한 "을"과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"을"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,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"을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"을"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"갑"이 "을"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"을"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"갑"과 "을"은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()년 동안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.
- 1.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
- 2. 하자책임·보증에 관한 사항
- 3.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

제5조 [상품의 판매위탁]

- ① "갑"은 "을"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을 "갑"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, "을"은 판매된 상품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를 "갑"에게 지급한다.
- ② "을"이 "갑"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상품은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, 「대외무역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, 「상표법」, 「특허법」, 「디자인보호법」,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

준수한 것이어야 한다.

③ "을"은 「대외무역법」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,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, 주소 및 주문자상표부착(OEM)방식 등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상품의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제6조 [판매가격의 결정]

상품판매가격은 "을"이 결정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"갑"과 "을"이 협의할 수 있으며, "갑"은 "을"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판매가격을 인하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 [상품정보의 제공 및 책임]

- ① "을"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일반정보 및 "갑"이 요청하는 상품의 주요 정보를 상품판매 개시 이전에 "갑"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"을"은 "갑"에게 제공한 상품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되는 경우 즉시 "갑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"을"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신체상·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"을"이 배상한다.

제8조 [검수기준 및 품질검사]

- ① "을"은 상품 판매를 위탁하면서 "갑"이 견본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제공한다.
- ② "을"이 "갑"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상품은 "을"이 "갑"에게 제출한 견본품과 동

일하여야 하며, 품질상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.

- ③ "갑"은 "을"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"을"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"을"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"갑"에게 제출한다.
- ④ "을"이 "갑"의 정당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"갑"은 외부 공인기관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"을"에게 청구하거나, 판매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 다만 상품의 특성상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"을"이 판매를 위탁한 상품이 법적기준 또는 계약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"갑"은 해당 상품의 위탁판매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을"이 시정요 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제9조 [상품의 발주]

"갑"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이 "을"의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, 주문을 접수하는 즉시 "을"에게 발주한다. "갑"의 귀책사유로 상품 발주가 지연되어 고객이구매의사를 철회하는 경우, "갑"은 "을"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.

제10조 [상품의 배송]

- ① "을"은 상품 발주를 확인하고 "갑"과 협의한 기준출고일 이내에 상품을 지정된 수취 인에게 신속하게 배송하여야 한다.
- ② "을"의 귀책사유로 상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이

로 인한 손해는 "을"이 배상한다. "갑"은 "을"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"을"에게 부담시키거나,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 [포장]

- ① "을"은 "갑"과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상품의 배송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.
- ② "갑"은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"을"에게 포장방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"을"이 제1항을 위반하여 배송과정에서 상품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소해는 "을"이 배상한다.

제12조 [상품판매 광고]

- ① "갑"은 "을"의 요청이 있는 경우, "갑"의 인터넷쇼핑몰 배너 또는 별도 페이지를 통해 "을"의 상품을 광고하고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- ② "갑"은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, "을"이 상품판매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"을"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"갑"은 광고계약 진행 중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, "을"에게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"갑"은 "을"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판매 광고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3조 [판매촉진행사의 실시]

① "갑"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명·행사기간·판매촉진비

용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판매촉진비용을 "을"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제1항의 약정은 "갑"과 "을"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판매촉진합의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"갑"은 약정과 동시에 이 합의서를 "을"에게 주어야 한다.
- ③ "을"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당해 판매촉진행사 실시에 따라 "을"이 실제 부담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 "을"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 [위탁판매 수수료]

- ① "을"이 "갑"에게 상품판매를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판매개시 전에 사전합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할인행사("갑"이 주도하는 자체 할인행사, 정부주도의 전국단위대규모할인행사 등) 시 적용될 수수료율을 정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.
- ② "갑"은 판매기간 내에 상품판매 위탁에 따른 수수료율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 [상품판매대금의 정산 및 지급]

- ① "갑"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"을"에게 지급한다. "갑"의 귀책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.
- ② "갑"은 상품판매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, 대금 지급에 있어 위탁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 공제할 비용이 있는 경우, 주문일자, 상품명, 상품가격, 공제금액, 공제금액 산출근거, 공제사유 등 상세 내역을 "을"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"갑"이 제시한 상세 내역에 대하여 "을"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. "갑"은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 "을"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6조 [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]

"갑"은 "을"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- 1. "을"의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
- 2. 거래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
- 3. "을"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이나 상품원가, 판촉행사 조건 등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
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
- 5.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
- 6. "갑"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"을"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

제17조 [상품의 교환·환불]

- ①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「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, "갑"과 "을"은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"을"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어 배송되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고객이 상품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, "갑"과 "을"은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고객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. "을"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"갑"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. 이에 따른 비

용은 "을"에게 사전 통지한 후 "을"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④"갑"은 고객이 반송한 상품이 "을"에게 도달하기 전에 고객에게 상품구매금액을 환불하여서는 아니된다. 단, "갑"의 부담으로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
⑤ 상품의 교환·환불에 따른 왕복배송비는 제1항의 경우 고객이, 제2항의 경우 "을"이 각각 부담한다. "갑"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배송비를 "을"에게 부담시켜 서는 아니된다.

제18조 [리콜]

"을"이 판매위탁한 상품의 제품상 하자 또는 사용자 안전상의 결함 등이 발견되어 상품의 전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"을"이 부담한다.

제19조 [개인정보보호]

- ① "갑"은 고객의 개인정보 중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"을"에게 제공한다.
- ② "갑"과 "을"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·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"을"은 "갑"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·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"을"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·누설·제공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- ⑤ "갑"은 "을"의 고객 개인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"을"에게 현장점 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. "을"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.

제20조 [비밀유지의무]

- ① "갑"과 "을"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공개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② 제1항의 의무는 "갑"과 "을"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()년간 계속된다.

제21조 [계약해지]

- ① "갑"과 "을"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양 당사자의 서면상 합의가 있는 경우
 - 2. "갑" 또는 "을"이 발행한 어음·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, "갑" 또는 "을" 자신에 의한 회생·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,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
 - 3.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
 - 4. "갑" 또는 "을"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
 - 5. 관계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,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 - 6. "을"이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, "을"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
 - 7. 기타 원활한 계약이행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신뢰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"갑" 또는 "을"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,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정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

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해지할 수 있다.

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,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22조 [지식재산권 등]

- ① "을"이 "갑"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은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, 저작권, 초상권 등) 및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.
- ② "을"은 "갑"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과 관련하여 "갑"또는 "을"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,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"갑"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·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"을"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, 이로 인하여 "갑"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.

제23조 [제조물책임]

"을"이 판매를 위탁한 상품이 「제조물책임법」상 결함으로 인하여 "갑"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, "을"은 「제조물책임 법」에 따라 "갑"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.

제24조 [하자책임 및 보증]

① 이 계약에 따라 "갑"이 판매한 상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"을"은 품목별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와 "을"의 품질보증서상의 규정에 따라 A/S, 교환, 반품, 회수 등의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한다.

- ② "을"의 상품에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무상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부터 ()년으로 한다.
- ③ "갑"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"을"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으로 "을"에게 지급할 결제 예정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보증금으로"갑"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. 하자보증금은 유보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"을"에게 반환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은 결제금액의 ()%를 넘을 수 없다.

제25조 [권리·의무의 양도금지]

"을"은 "갑"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,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. 단, 상품판매대금 채권 등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"갑"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다.

제26조 [통지의무]

- ① "갑"과 "을"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1. 주소, 상호,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
 - 2.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
 - 3. 그 밖에 "갑"과 "을"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.

제27조 [상계]

제21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의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.

제28조 [분쟁해결 및 재판관할]

-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"갑"과 "을"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"갑"과 "을"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, "갑"과 "을"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-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③ "갑"과 "을"이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,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.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.
 - ※ 중재에 의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
 - ③ "갑"과 "을"이 제2항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, 다음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판정으로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한다.

중재기관: (

중재규칙: 위 중재기관이 정하는 중재규칙

제29조 [계약의 효력]

- ① "갑"과 "을"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,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,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-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"갑"과 "을"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,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
- 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"갑"과 "을"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, 그 변경 및 수정은 "갑"과 "을"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_____년 ___월 ___일

(갑) 주소 : ___시 ___동 (을)

(을) 주소:___시 ___구 ___동

대표이사: (인) 대표자: (인)